

<p>市長으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제14회 정기회 제5차 建設委員會에서 심사하였던바,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첫째로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적용범위를 서울特別市長이 관리하는 도로로 한정하고 자치구에서 관리해야 하는 구도는 제외하였고, 둘째는 기금의 회계관리 공무원의 명칭을 수정하는 것이며, 셋째는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市의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의를 구성·운용하는 내용인바, 저희 建設委員會에서는 참석인원 전원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p> <p>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建設委員會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p> <p>○議長 文一權 수고하셨습니다.</p> <p>그러면 建設委員會에서 심사보고한 서울特別市施設管理公園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서울特別市有料道路費特別會計設置條例廢止條例案, 서울特別市道路掘鑿復舊基金設置中改正條例案, 이상 3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p> <p>議員 여러분, 의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p> <p>의의 없으시면 이상 3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유료도로비특별회계설치 조례폐지조례안</p> <p>서울특별시유료도로비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參 照)</p> <p>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p> <p>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7조중 “5인 이내”를 “6인 이내”로 한다.</p> <p>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제24조(재산의 무상사용)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공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p> <p>② 공단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서울특별시의 재산을 시장의 승인을 얻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p> <p>서울특별시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장의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도로굴착복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중 “운영”을 “운용”으로 한다.</p> <p>제5조중 “기금의 출납명령관 및 출납공무원”을 “기금운용관 및 출납원”으로 한다.</p> <p>“제6조”를 “제7조”로 하고, “제7조”를 “제8조”로 하며,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제6조(기금운용심의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p> <p>② 다음 각호의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2. 주요항목지출금액의 변경 3.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4.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p>③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④ 위원장은 행정(2)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도로국장으로 한다.</p>

<p>부 칙</p> <p>이 조례는 도로법 제14조 및 제19조에 의거 서울특별시장이 특별시도를 인정·공고한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p> <p>○議長 文一權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建設工事品質試驗等에關한條例案을 상정합니다.</p> <p>(議事棒 3打)</p> <p>建設委員會 尹福永議員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尹福永議員 존경하는 文一權 議長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本議員은 서초 제3선거구 출신 建設委員會 所屬 尹福永議員입니다.</p> <p>本議員이 서울特別市建設工事品質試驗等에關한條例案에 대하여 建設委員會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에 대하여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p> <p>본 조례안은 1996년 12월 12일 서울特別市長으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제14회 정기회 제5차 建設委員會에서 심사하였는바, 동 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서울特別市 建設資材試驗所에서 실시하는 품질시험 등과 그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둘째, 품질시험의 종류를 선정시험, 관리시험, 검사시험으로 나누며 셋째, 품질시험대상, 건설공사의 범위를 규정하는 사항인바, 동 조례안에 대하여 1996년 12월 18일 鄭在天委員의 제안과 張精一委員의 동의로 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여 建設委員會에서 심사를 받았습니다.</p> <p>수정안의 주요골자는 첫째로 발주자, 주택건설업자의 용어는 건설공사의 발주자, 주택건설등록업자로 수정하고 둘째, 이 조례안에서 건설기술법령의 규정에 의한다라는 준용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p> <p>동 수정안에 대하여 저희 建設委員會에서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p> <p>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참조하시고, 저희 建設委員會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p>	<p>감사합니다.</p> <p>○議長 文一權 수고하셨습니다.</p> <p>그러면 서울特別市建設工事品質試驗場에關한條例案을 建設委員會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p> <p>議員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p> <p>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p> <p>.....</p> <p>(參 照)</p> <p>서울특별시건설공사품질시험등에 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p> <p>서울특별시건설공사품질시험등에관한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p> <p>제3조제1호중 “발주자,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업자(이하 “건설업자 등”이라 한다)”를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이하 “발주자”, “건설업자등”이라 한다)”로 한다.</p> <p>제10조제7항중 “검사시험시에는”앞에 “시험소장의”를 삽입한다.</p> <p>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제2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기술관리법령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다.</p> <p>별지 제1호서식 본문중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26조”를 “서울특별시건설공사품질시험등에관한조례 제9조”로 한다.</p> <p>별지 제3호서식 본문중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26조”를 “서울특별시건설공사품질시험등에관한조례 제10조”로 한다.</p> <p>별지 제4호서식 본문중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20조제4항”을 “서울특별시건설공사품질시험등에관한조례 제12조”로 한다.</p> <p>서울특별시건설공사품질시험등에관한조례안</p> <p>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관리법령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와 지방공사를 포함한 산하기관(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주하였거나, 허가·인가·승인을 한 건설공사의 품질시험에 관한 사항 및 서울특별시건설자재시험소(이하 “시험소”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품질시험 등과</p>
---	---